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7일 16시 33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	3

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

2014.04.17 조회수 680 등록자 박종일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56
담당부서	도시미화과
상위법령	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
조례	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
유형	2호 -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
등록사유	환경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1998-04-04
규제시행/폐지일	1998-04-04
규제내용	제15조(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) ②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벌표 4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, 처리하여야 한다.(개정 2010.10. 6)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53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58

Yeosu Web Contents

